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7
----------	---

제출연월일 2006. 1. 11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조)
- 나.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정함(안 제4조)
- 다.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안 제5조)
-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함(안 제6조)
- 마.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안 제7조)
 -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 4) 영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 11 .22 ~ 12. 2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조례 호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7조 (검토의견 제출)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①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회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 (수당과 여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발 취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장,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아 당해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